

「위해식품 회수」와 「이물보고의 기준·대상 및 절차」 고시안 마련을 위한 산업계 의견 전달

협회는 최근 식품안전 관리강화대책으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 제72조(폐기처분 등)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개정법령(안) 중 제57조(식품 등의 이물보고 기준·대상)와 관련하여 회수등급 분류기준과 보고대상 이물기준 및 절차에 있어 관련 고시(안)이 입안예고 되기 전에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2009년 6월 22일(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산업계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주요 의견제출 내용

가. 「위해식품 회수」 :

이물에 대한 위해학산 및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 등의 회수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가 경제적 손실과 기업·정부의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함.

- 회수제도 취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 동일 lot, 동일 클레임이 연속 발생·접수된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단발성 이물 클레임의 경우에는 회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에 대한 기준에 대해 선진국의 이물규정과 이물발생 의무보고를 통해 이물의 정량적 위해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인위적 제어가 불가능한 이물의 규정을 신설하고 식량자원의 불필요한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함.

나. 「식품 등의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 및 절차」

- 이물의 범위 :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및 ‘기타 식품 등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혼입되어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인정하는 물질’로 세분화함.
- 「이물의 보고 절차」
 - 1) 식품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고 대상
 -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및 악의적인 소비자가 신고하는 이물
 - 2) 식품업체가 시·도(또는 시·군·구) 보고 대상

- 제조과정 중에서 각종 벌레 및 곤충, 인체 기생충 외의 기생충 및 그 알 등 위생곤충이 혼입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단, 고배율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기생충 및 그 알은 제외) 및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대상이 아닌 이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중 이물관련 행정처분 기준(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협회는 지난 2009년 7월 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중 이물관련 행정처분 기준(안)인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조치가 일부 수정되어 품목제조정지 처분으로 경감되었으나, 이 또한 업계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에 과도하여 기업의 경제의지가 좌절되며, 경제적으로도 매출손실이나 자원낭비, 종사자들의 실업초래 등 직·간접 손실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기업의 지속가능한 영업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물관련 행정처분 합리화로 사회 경제적 측면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가경제 활성화 및 식품산업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계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18개 식품관련 협회 및 단체의 동의를 받아 공동명의로 국무총리실, 보건복지기획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한국식품공업협회, 대한제당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한국암착식용유업중앙회,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인삼제품협회, 한국장류공업협동조합, 한국전분당협회, 한국제합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조미료공업협동조합, 한국통조림식품공업협동조합 등 18개 식품관련 협회 및 단체

- 업계는 이물 저감화를 위해서 생존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물 제로화 실현은 불가항력적입니다.
- 식품업계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 소비자들의 직접적 건강 향상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물 클레임 감소 캠페인 (5S운동, 위생교육 등), 시설투자(금속검출, X-ray 등) 및, 품질 시스템 강화 (PEST CONTROL업체 위탁, HACCP도입 확대 등) 등 이물 저감화 사업을 추진중임.
- 행정규제는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기업의 부단한 노력에도 금속/유리

등의 이물은 현 기술 여건상 제로화는 어려우며 준수할 수 없는 행정규제는 비의도적인 법규위반자를 대량으로 양산 시킬 수 있음.

- 일본 등 선진 외국기업도 이물발생율이 3.4ppm수준으로 이물을 제로화 할 수 없는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99ppm 수준으로 추계됨.
- 과도한 행정처벌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소기업은 존폐위기까지도 직면하게 됩니다.
 - 현 규정을 적용 하여 통상적으로 1년간 한 제품에서 평균2~3회 정도의 금속/유리 이물이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년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중견 및 대기업의 경우 년 간 30억 원 이상이 과징금 등의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예상됨.
 - 따라서 검출한계 수준이하의 단발성 이물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등의 행정처분보다는 1차 시정 및 계도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여야 함.
 - 선진 제외국의 이물에 대한 행정제재는 범죄행위 및 인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다발적 이물에 대해서 생산중단 등의 조치를 하며, 단발성 이물의 경우 개선시스템을 고려하여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함.
- 과도한 행정처분은 소비자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년 10억 원 이상 매출제품에 대해 제조정지 7일이 내려지면 약 500만 원 이상의 과징금 처분(년 100억 원 이상 매출제품은 1,280만 원임)은 상위 식품위생법 상의 이물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의 과태료인 300만 원보다 과하여 이물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물보고를 회피하여 소비자의 식품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 행정처분 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1차 위반 시부터 “품목제조정지”的 처분을 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적인 개선의지 및 활동을 통한 합리적인 이물관리 시스템 개발 및 조치를 저해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 과학기술수준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물은 ‘처벌’이 아니라 재발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방법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현행기준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오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물혼입 행정처분 기준관련 간담회 및 (주)농심 안성공장 견학방문

보건복지가족부와 협회는 2009년 7월 17일(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물 저감화 방안 마련을 협의하기 위하여 간담회 및 공장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식품내 이물 검출에 대한 행정처분강화에 따른 식품업계가 처한 어려운 현실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루어졌으

며, 보건복지가족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 CJ제일제당(주) 김창민 상무, 협회 김용현 업무이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 공장견학은 (주)농심 안성공장을 방문하여, 이물저감 설비 및 관리시스템을 견학하고 현재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정부규제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다시한번 설명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일 시 : 2009. 7. 17(금) 12:00 ~ 16:30
- 장 소
 - 간 담 회 : 한뫼촌(서울 종로구 소재)
 - 공장견학 : (주)농심 안성공장(경기도 안성시 소재)
- 참 석 자 : 총 20명
 - 정 부 : 보건복지가족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5명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손문기 식품관리과장
 - 업 계 : (주)농심 강우석 상무 등 8개사 9명
 - 협 회 : 협회 김용현 업무이사 등 5명
-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행정처분 협의(안)내용
 - 이물의 범위를 구체화함.(유리,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재질과 크기의 이물 또는 동물(생쥐 등) 사체 → 칼날, 동물의 사체)
 - 기준조정 : 칼날, 동물의 사체의 경우 행정처분(1차 품목제조정지 7일 → 2차 품목제조정지 15일 → 3차 품목제조정지 1월)
 - 행정처분 일반기준 보안
 - 소비자 신고 이물검출 사례를 성실하게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한 경우 1차 시정명령
 - 시정명령 이후 발생한 이물검출 사실을 식약청장에게 ①성실하게 보고하고 ②시설개선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③현재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발생한 이물혼입의 경우 차수에 관계없이 시정명령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면담

협회 홍연탁 상근부회장은 6월 22일(월)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면담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1차 이물 검출시 부터 바로 업무정지와 해당 제품수거 폐기하는 내용과 2,3차수에 가중한 행정처분 규정이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여 업계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식약청은 합리적 수준에서 재검토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GMO 농산물의 함유제품에 대하여 전면표시제 도입은 국제경쟁력에 저해 요인으로 되므로 식용유 등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한 제품과 5% 미만 함유 제품에 대하여는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과의 간담회 개최

한국식품공업협회 박승복 회장과 홍연탁 상근부회장은 2009년 7월 8일(수)에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식품산업진흥정책 지원에 대한 요청과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식품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운 현안을 건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제조분야의 R&D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식품산업에 대한 지원육성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농어업 분야에만 R&D 지원이 되고 있어 국내 원료농산물의 소비 증대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식품제조가공산업 R&D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국내원료 농산물의 소비증대와 상생협력의 효과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긍정적인 방안 수립을 검토할 것임을 천명함.
- 국내·외 식품전시회에 협력 및 지원
 - 협회는 2009년 5월 19일 중국 상해 SIAL China 박람회에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4,000만 원을 지원 받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를 설명하고 앞으로 본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박람회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내 우수 가공식품들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
- 식품안전 규제강화에 따른 식품업계의 어려운 현안 설명

- 현재 식품이물검출에 대한 행정처분 등 식품안전을 위한 규제강화로 인하여 식품업계는 심각한 영향으로 존폐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 GMO 농산물의 함유제품에 대한 전면표시제 도입은 국제경쟁력에 저해요인이 되므로 식품산업 진흥 방향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더불어, 지난 4월 23일(목) 협회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협회와 전라북도 그리고 익산시 삼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많은 기업이 식품클러스터 단지에 입주하도록 유치를 독려하고 오는 7월29일(수) 프라자호텔에서 식품산업육성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업무유대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상생의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설명함.

이물관련 국회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식품관련 단체장은 2009년 7월 15일(수) 국회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방문하여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단체장 면담은 식품내 이물 검출에 대한 행정처분강화에 따른 식품업계가 처한 어려운 현실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업계의 의견이 수렴된 「식품이물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일 시 : 2009. 7. 15(월) 16:00
- 장 소 : 국회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실
- 참 석 자 : 국회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 한국식품공업협회 홍연탁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부회장, 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 최선윤 회장, 한국장류협동조합 오무 이사장,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경정수 이사장, 한국육가공협동조합 강상훈 이사장, 한국제합공업협동조합 도운기 이사장 등 총 8명

□ 「식품이물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내용

- 이물 저감화를 위한 생존차원의 노력을 지속함에도 이물의 완전한 Zero화는 어려움.
- 과도한 행정처분은 기업 경영난을 초래하고, 근본적인 이물저감 개선방안은 되지못함.
- 선진국의 경우 이물혼입 사실만으로 생산중단 등 행정제재 하지않음.

- 준수하기 어려운 행정제재는 기존의 이물방지 활동마저 위축시켜 소비자의 안전에도 역행 할 소지가 있음.
- 단발성 이물혼입에 대해 위해도가 높거나 의도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같은 수준으로 재재함은 과도함.

□ 협회 견의사항

- 이물보고는 성실히 보고를 받아 이물 저감화에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제외 선진국에서도 제조정지등의 행정제재는 없으며, 이물혼입의 피해가 다수에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범죄행위로 간주될 경우에 한해 회수 등 행정조치를 행함.
 - 칼날, 혐오감을 주는 동물의 사체의 이물혼입의 경우 1차부터 품목제조정지 7일 및 해당 제품 폐기는 가혹하므로 일반적인 예외 규정이 꼭 필요함.
- 이물검출기 설치등 영업자의 자발적인 시설개수 및 기술적 한계에 대한 판정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음.
- 24시간 내 신속보고는 이물보고대상 범위판단을 위한 조사시간이 필요하므로 어려움이 있으며, '72시간 이내 신속보고'로 수정(안)을 건의함.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최 식품관련 단체장과의 간담회 참석

농수산물유통공사 윤장배 사장은 2009년 7월 20일(월) aT센터에서 8개 식품관련 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분야별 단체장과 식품산업의 발전방향과 상호간 교류 협력의 기회를 갖고자 개최되었으며, 협회에서는 홍연탁 상근부회장이 참석하여 식품산업의 진흥에 대한 정책건의를 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일 시 : 2009. 7. 20(월) 11:00 ~ 13:00
- 장 소 : aT센터 지하 1층 다이아몬드홀II
- 참 석 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윤장배 사장, 한국식품공업협회 홍연탁 상근부회장, 한국유가공협회 이규태 회장,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김영웅 부회장, 한국장류협동조합 오무 이사장, 대한제과협회 정일석 사무총장,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 최병문

전무, 한국육가공협회 김실중 부회장, 한국제분공업협회 최병순 전무 등 총 9명

○ 협회 건의내용

- 식품제조업 분야 R&D 지원
- 국내외 식품박람회 관련하여 수출확대 식품제조기업 참여 지원 요청
- 이물질 등 규제관련하여 많은 노력으로 자신신고시 시정처리 등 다소 완화되었지만, 아직 외국보다 규제가 심하며 규제완화가 필요
- GMO 표시 관련하여 비의도적 포함비율 3%까지 완화와 전면표시 제도 완화
- 식품산업 주요현안에 대한 연구용역 및 심포지엄 개최시 협회와 협의를 통한 자금 지원 등 업무협의
- 식품산업 통계조사는 현재 회원사를 통해 조사하고 있으므로 협회를 통해 연구용역 요구
- 연간 15만명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 건의가 있었으며, 온라인 시스템 구축 시 지원 등 협조

식품안전 제도개선을 위한 협회 이선규 전문위원 위촉

협회에서는 지난 총회에서 식품안전 제도개선 및 대정부, 국회, 소비자단체, 언론 관계 등의 업무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을 위촉하기로 한 바에 따라 협회 법령제도분과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7월 1일자로 이선규 전문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가. 전문위원 : 이 선 규 (李 鮑 圭)

나. 주요 약력

- 고려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 대상 상무(품질경영실장)

2009년 8월 중 신규식품영업자 교육일정표

월	일	교육시간	교육장소	대상지역	대상업종
8월	10일	09:00~18:00	여의도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11일	09:00~18:00	제주 중소기업지원센타 (다목적홀)	제주특별 자치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11일	09:00~16:00	제주 중소기업지원센타 (다목적홀)	제주특별 자치도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12일	09:00~13:00	제주 중소기업지원센타 (다목적홀)	제주특별 자치도	소분·판매업등 식품등수입판매업
	12일	09:00~16:00	부산국제신문사 (4층 대강당)	부산광역시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13일	09:00~18:00	부산국제신문사 (4층 대강당)	부산광역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14일	09:00~13:00	부산국제신문사 (4층 대강당)	경상남도	소분·판매업등 식품등수입판매업
	14일	09:00~16:00	여의도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17일	09:00~13:00	여의도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소분·판매업등
	17일	14:00~18:00	여의도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식품등수입판매업
	18일	09:00~18:00	여의도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19일	09:00~18:00	여의도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20일	09:00~18:00	광주시민회관 (대강당)	광주광역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20일	09:00~16:00	광주시민회관 (대강당)	광주광역시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21일	09:00~13:00	광주시민회관 (대강당)	광주광역시	소분·판매업등 식품등수입판매업
	24일	14:00~18:00	여의도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소분·판매업등
	27일	09:00~18:00	여의도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28일	09:00~18:00	여의도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기존식품위생교육 일정은 본회 위생교육부(tel : 02-3470-815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해외박람회 일정표

박람회명	개최국가	기 간
말레이시아 국제식품 박람회 (alaysia international food & beverage trade fair 2009)	말레이시아	2009.07.09 ~ 2009.07.11
인도네시아 식품기술 박람회 (indonesian food technology exhibition 2009)	인도네시아	2009.08.12 ~ 2009.08.15
홍콩식품박람회 (hong kong food expo 2009)	중 국	2009.08.13 ~ 2009.08.17
로스앤젤레스 미서부 식품박람회 (western foodservice & hospitality expo 2009)	미 주	2009.08.30 ~ 2009.09.01
아르헨티나 식품박람회 (sial mercosur 2009)	미 주	2009.09.26 ~ 2009.09.28
쾰른 식품 박람회 (anuga 2009)	유 럽	2009.10.10 ~ 2009.10.14
일본 요코하마 라면 박람회 (ramen expo 2009)	일 본	2009.10.13 ~ 2009.10.15
동경 식품개발전 (hi / s-tec japan 2009)	일 본	2009.10.14 ~ 2009.10.16
뭄바이 식품 원료 박람회 (food ingredient india 2009)	인 도	2009.10.23 ~ 2009.10.24
북경 국제 식품기공 및 포장기계 박람회 (china foodtech 2009)	중 국	2009.10.27 ~ 2009.10.29
마이애미 식품 및 음료 박람회 (america-s food & beverage show 2009)	미 주	2009.11.09 ~ 2009.11.10
상해 식음료박람회 (fhc china 2009)	중 국	2009.11.18 ~ 2009. 11.20
인도 뮠바이 식품기술 박람회 (world of food INDIA 2009)	인 도	2009.11.25 ~ 2009. 11.27